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48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10. 01. 김 향 숙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10. 1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19. 10. 17. 총무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개정이유

-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설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센터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안 제10조)
○ 주민참여 방안 마련 의무 규정(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28호
- 예고기간: 2019. 10. 4. ~ 10. 10.(6일)
-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 의견없음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센터의 시설에 관한사항(안 제4조), 센터 운영사항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및 주민참여 방안 마련 의무를 규정(안 제10조~ 제11조)한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등 관련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19. 10. 17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